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37
----------	------

2017년 9월 4일  
운 영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. 7. 24. 김용석(도봉) 의원 외 18명

나. 회부일자 : 2017. 7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- 2017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청소년의회교실”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
-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, 성과 평가 결과의 운영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.
-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.
-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,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### 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가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.

### 2 청소년의회교실 사업 개요 및 연혁

- 청소년의회교실은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으며,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및 실적은 다음과 같음.

<표 1> 최근 3년간 청소년의회교실 사업 예산 및 실적

구 분	예산(천원)	사업실적		비 고
		횟수(회)	인원(명)	
2016	43,000	13	1,303	초·중등
2015	31,760	11	1,092	초등
2014	32,142	11	1,161	초등

- 그러나, 최초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장방침 등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 계획에 의해 운영해 오며 따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- 이에 본 제정안은 자치법규에 청소년의회교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3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 제1호는 “청소년”이란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, 같은 조 제2호는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의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.

- 그러나, 청소년의 정의 중 ‘나이’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유아, 초·중·고생, 학교 밖 청소년, 대학생 등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, ‘학교’의 범위에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, 비인가 대안학교 등 관련법상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.
- 한편, 청소년의회교실의 정의 중 ‘민주시민교육’이라는 용어가 「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의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‘민주시민교육’<sup>1)</sup>과 동일한 개념인지, 청소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차별화된 개념인지를 명확히 하고, ‘모의의회’ 만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회 체험활동을

1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시민교육”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·가치·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#### 4 운영계획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되, ① 목표와 추진 방향 ②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 안전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토록 하며, 전년도 성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**제3조(운영계획)**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
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3. 안전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- 이는 의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의회교실 관리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.
- 다만,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즉각 공개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,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제1항과 제3항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5 선정 및 운영 등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하되,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거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관 간 상호 협력과 협치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규정한 점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.

**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**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

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거나 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(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동안 서울특별시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- 다만,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모집을 위한 협의주체를 ‘서울시교육청’보다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가진 ‘서울시교육감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, 안 제2조 제1호의 ‘청소년’에 대한 정의 중 학교에 대한 조문이 수정될 경우에는 안 제4조 제2항 일부 조문의 조정이 요구되며, 이외 띄어쓰기, 한글맞춤법 등에 따른 체계 자구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.

## 6 수료증 및 표창(안 제5조~제6조)

- 안 제5조는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6조는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

에게 대해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.

**제5조(수료증)**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**제6조(표창)**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- 이는 의회가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수료증과 표창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인용 조례의 표기상 오류를 바로잡는 등 일부 체계 자구의 수정 보완이 요구됨.

## 7 종합 의견

- 본 제정안은 1996년부터 의장방침에 따라 추진해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계속성과 관리·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안 제2조의 ‘청소년’과 ‘청소년의회교실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안 제3조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며, 띄어쓰기, 한글맞춤법, 인용 조례 표기상 오류를 바로잡는 등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**<표 2> 수정안 대비표**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<b>지녀아할</b>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<b>지녀야 할</b>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”이란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<u>의회 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.</u>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<u>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<u>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.</u></p>
<p><b>제3조(운영계획)</b> ①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운영계획에는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</li> <li>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</p> <p align="right"><u>&lt;신 살&gt;</u></p>	<p><b>제3조(운영계획)</b> ①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</li> <li>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</p> <p>④ <u>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u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</b>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교육청</u>과 협의하거나 <u>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</u>(「<u>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</u>」 제2조제3호의 <u>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</u>)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<u>지녀야 할</u>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④ 의장은 <u>청소년의회교실 운영</u>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<u>참여자</u>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</b>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교육감</u>(이하 “<u>교육감</u>” 이라 한다)과 협의하거나 <u>시에 있는 학교</u>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<u>지녀야 할</u>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④ 의장은 <u>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</u>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<u>참가자</u>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
<p><b>제5조(수료증)</b>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조(수료증)</b>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b>제6조(표창)</b>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</u>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	<p><b>제6조(표창)</b>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</u>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
<p><b>제7조(홍보)</b>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,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.</p>	<p><b>제7조(홍보)</b>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b>제8조(협조)</b>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<u>서울특별시교육감</u>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</p>	<p><b>제8조(협조)</b>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<u>교육감</u>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</p>
<p><b>제9조(시행세칙)</b>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<b>제9조(시행세칙)</b> (제정안과 같음)</p>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**

**6. 토 론 요 지 : 없음.**

## **7. 수정안의 요지**

### **가. 수정이유**

- 안 제2조의 ‘청소년’과 ‘청소년의회교실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안 제3조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며,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.

### **나. 주요내용**

- 청소년과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).
-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,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띄어쓰기, 한글맞춤법 및 인용 조례 표기상 오류 수정 등 일부 체계자구를 보완함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 및 제8조).

**8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**

**(재적위원 13명,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).**

9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3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4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2조의 ‘청소년’과 ‘청소년의회교실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안 제3조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며,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청소년과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).
-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,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띄어쓰기, 한글맞춤법 및 인용 조례 표기상 오류 수정 등 일부 체계자구를 보완함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 및 제8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○ 기 타 : 해당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지녀야할”을 “지녀야 할”으로 한다.

안 제2조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회 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모의의회를”을 “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”로 한다.

안 제3조 제1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계획에는”을 “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

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안 제4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로, “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(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)”를 “시에 있는 학교”로 각각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녀야 할”을 “지녀야 할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청소년의회교실 운영”을 “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참여자”를 “참가자”로 한다.

안 제6조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”로 한다.

안 제8조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 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<b>지녀야 할</b>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 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<b>지녀야 할</b>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”이란 <b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</b>을 말한다.</p> <p>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<b>의회 운영에 관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모의 의회</b>를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”이란 <b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</b>을 말한다.</p> <p>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<b>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</b>을 말한다.</p>
<p><b>제3조(운영계획)</b> ①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<b>운영계획에는</b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</li> <li>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3조(운영계획)</b> ①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<b>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</b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</li> <li>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</p> <p>④ <b>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b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</b>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<b>서울특별시교육청</b>과 협의하거나 <b>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</b>(「<b>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</b>」 제2조제3호의 <b>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</b>)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<b>지녀야 할</b>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④ 의장은 <b>청소년의회교실 운영</b>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<b>참여자</b>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</b>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<b>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</b>과 협의하거나 <b>시에 있는 학교</b>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<b>지녀야 할</b>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④ 의장은 <b>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</b>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<b>참가자</b>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
<p><b>제5조(수료증)</b>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조(수료증)</b>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b>제6조(표창)</b>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「<b>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</b>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	<p><b>제6조(표창)</b>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「<b>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</b>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
<p><b>제7조(홍보)</b>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,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.</p>	<p><b>제7조(홍보)</b>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b>제8조(협조)</b>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<b>서울특별시교육감</b>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</p>	<p><b>제8조(협조)</b>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<b>교육감</b>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</p>
<p><b>제9조(시행세칙)</b>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<b>제9조(시행세칙)</b> (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의회교실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)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

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3.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

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5조(수료증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6조(표창)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

인에게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7조(홍보)**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,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조)**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9조(시행세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